

## 2017년도 제1회, 제2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7년도 제1회, 제2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3일  
충청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 1. 선발예정인원

시험명	종류	계급	직렬	직류	구분모집	거주지제한 및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도내거주자	해당 시·군거주자
제1회 임용시험						6명	-
제1회 임용 시험	경력 경쟁	7급	수의	수의	일반	청주시1, 충주시1, 영동군1, 진천군1, 괴산군1, 단양군1  ※거주지제한 없음	
제2회 임용시험						36명	5명
제2회 임용 시험	공개 경쟁	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일반	도일괄1, 청주시14, 충주시1, 보은군2, 옥천군1, 영동군2, 진천군3, 괴산군3, 음성군4, 단양군2	제천시2, 증평군2, 단양군1
					장애인	영동군1, 진천군1	
					저소득층	청주시1	

※비고

- 1)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합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모집에서 충원합니다. 단, 해당 직류의 거주지제한 및 임용예정기관이 동일한 경우에 한합니다.
- 2) 임용예정기관 중 “도일괄”이란 미리 임용기관을 지정하지 않고 선발하는 것으로 최종 합격자는 시·군 또는 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결원사정에 따라 임용후보자를 배분, 추천하여 해당기관에서 임용하게 됩니다.
- 3) 원서접수 시 “시험명-종류-계급-직렬(직류)-구분모집-거주지제한 및 임용예정기관”에서 기관을 선택하여 접수하게 되며 이것이 모집단위가 됩니다. 임용시험은 모집단위별로 실시됩니다.
- 4) 최종합격한 자는 신규 임용 후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전보·전출이 제한됩니다.

## 2. 시험과목

시험명	종류	계급	직렬	직류	시험과목
제1회 임용시험					
제1회 임용시험	경력 경쟁	7급	수의	수의	필기시험 없음
제2회 임용시험					
제2회 임용시험	공개 경쟁	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 ※비고

- 1) 출제문항 및 배점 : 각 과목별 20문항, 4지 택1형이며, 100점 만점입니다.
- 2) 시험시간 : 각 과목별 20분(1문항당 1분)입니다.
- 3) 2013년부터 시험관계법령에 의해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선택과목 득점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2 및 「별표 10」 참조)
- 4) 필기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에 위탁 출제하며 시험종료 후 문제지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 3. 시험방법

### ○ 제1회 임용시험

시험명	1차 시험	2차 시험	비 고
제1회 임용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	-

### ※비고

- 1) 전(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해야만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2)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와 직무관련 실무경력, 취업지원 대상자, 자격증 등을 고려하여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서류전형을 위하여 원서접수 후 2017. 2. 10.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 및 접수방법은 붙임 “제1회 임용시험 증빙서류 제출 및 접수방법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방법은 붙임 “제1회 임용시험 합격자결정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제2회 임용시험

시험명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비 고
제2회 임용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1·2차 병합실시)		서류전형 면접시험	-

### ※비고

- 1) 전(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해야만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2)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합니다.
- 3) 필기시험 합격기준 :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합니다.
- 4) 각 단계별 시험의 합격자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시험관계법규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결정합니다.

## 4. 응시자격

가.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 시 제89조에 따라 취업제한 위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나.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 제한

- 1) '1. 선발예정인원'의 거주지 제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주지제한 및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도내거주자	해당 시·군거주자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단, 수의7급은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전국 응시 가능)

2) 거주지 제한 확인 기준

가)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 시·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 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됩니다.

예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관할구역이 종전 충청북도 청원군에서 제외되어 세종특별자치시로 된 지역(종전의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산수리·행산리·갈산리·부강리·문곡리·금호리·등곡리·노호리 일원)의 거주경력은 충청북도 거주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다. 응시연령

구 분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수의 7급	20세 이상	1997.12.31. 이전 출생자
사회복지 9급	18세 이상	1999.12.31. 이전 출생자

라. 자격·면허증 등의 응시자격(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시험명	종류	계급	직렬	직류	구분모집	응시자격
제1회 임용시험						
제1회 임용 시험	경력 경쟁	7급	수의	수의	일반	수의사면허
제2회 임용시험						
제2회 임용 시험	공개 경쟁	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일반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사 3급 이상</li> <li>•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li> </ul>
					저소득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사 3급 이상</li> <li>•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의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자</li> </ul>

※비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해당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2) 자격·면허증 등 응시자격에 대한 기준일은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합니다.
- 3) 제2회 임용시험 “사회복지9급”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붙임 “사회복지사 자격증 제출방법 등”을 확인하여 증빙서류 및 서약서를 제출(등록)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관련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소명자료 요구 시 소명을 못할 경우에는 시험관계법령에 의해 부정행위자로 처분 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1)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2)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구분모집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의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만,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봄이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2) 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와 수급·보호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구분모집에도 응시자격이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사. 기 타

- 1) 성별은 제한 없습니다.

##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접수기간 (취소마감일)	가산점등록· 신청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 표
제1회 임용시험 (수의7급)	'17. 2. 1 ~ 2. 3  (‘17.2.8. 21:00)	-	서류전형	-	2.10(금)까지 증빙서류제출	2.16(목)
			면접시험	2.16(목)	2.21(화) ~2.23(목)	2.28(화)
제2회 임용시험 (사회복지9급)	'17. 2. 20 ~ 2.22  (‘17.2.27. 21:00)	'17. 4.8 ~ 4.12	필기시험	2.28(화)	4.8(토)	5.9(화)
			면접시험	5.9(화)	5.29(월) ~5.31(수)	6.22(목)

※비고

- 1) 시험장소와 각 시험 단계별 합격자발표는 충청북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chungbuk.go.kr>) 「시험채용」란에 공고하고,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2) 제1회 임용시험 “수의7급” 응시자는 원서접수 후 2017.2.10.까지 붙임 “증빙서류 제출 및 접수방법 등”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도착)하여야 합니다.
- 3) 제2회 임용시험 “사회복지9급”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붙임 “사회복지사 자격증 제출 방법 등”에 따라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필기시험성적은 불합격자는 필기시험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정한 기간 내에만 조회 가능합니다.(※ 원서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조회 가능)
- 5)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해당 시험의 가산점 등록기간 내에 가산 해당사항(취업지원 및 의사상자 등, 기술자격·면허증의 명칭과 증명번호 등)을 등록하여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할 예정입니다.

##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가. 접수방법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1522-0660)에 직접 접속하거나, 충청북도 홈페이지(<http://www.chungbuk.go.kr>)의 「시험채용」란에서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배너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 접수센터’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나. 접수시간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까지입니다.

### 다.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1) 인터넷 접수 시에는 응시수수료(9급: 5,000원, 7급: 7,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2)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단, 원서접수 취소기간 종료 후 저소득층 여부를 확인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
  - 3)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합니다.
    - 가)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 나)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 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이거나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취소마감일 내에)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 ※ 공휴일·토요일에는 응시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없으며, 응시수수료 환급은 응시원서 접수 취소마감일까지 붙임 ‘응시수수료 환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43-220-2532, 2534)

###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1) 2014년부터 응시자의 가산점 등록 및 관련기관 조회·확인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 ※ ‘9.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항목 참고
- 2)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합격 후 임용후보자 등록 시에도 동일원판 사진이 사용**되니 규격에 맞는 사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식별이 어려운 사진일 경우 신분확인을 위한 별도의 붙이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 : 해상도 100dpi 이상에 3.5cm×4.5cm기준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 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험생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미착용 등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3) 원서접수 기간 내에 응시수수료 결제 후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모집단위 변경이 불가하며, 모집단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여야 합니다.  
※ 접수기간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며, 원서접수 기간 내에 취소·접수하는 것은 가능
- 4) 원서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5)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또한 2017년 말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의 개인정보가 폐기되므로 응시원서 등은 수험생 개인이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6) 충청북도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7) 장애인 응시자 중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응시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붙임 '장애인 등 편의 지원 제공안내'를 참고하시고 원서접수 시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서 반드시 확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장애유형별 편의 제공은 인사혁신처의 지원 기준에 따릅니다.  
※ 원서접수 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확인 → 장애인 등 편의제공 신청 → 소정의 기간(원서접수기간 포함 5일 이내) 내에 증빙서류 제출(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 증빙서류 확인 및 제공여부 공지
- 8)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에 필요한 증빙서류(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증명서 등) 또는 기타 시험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적용시험 :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인원 : 시험실시 단계별 선발예정인원에 30%를 곱한 인원 수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이하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소수점이하 버림. 시간선택제 구분모집의 적용은 전일제 기준으로 직위개념으로 적용되며 관계법규에 의해 산정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니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따릅니다.

## 8.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가. 적용대상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나. 실시방법 : 모집단위(거주지제한 및 임용예정기관 동일)의 일반모집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따라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일반모집 인원이 없는 경우나 초과합격제 적용으로 전년도 선발인원이 증가한 경우 당해연도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시 초과합격제 미적용

## 9.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하며 단, 연구·지도직 공무원 제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및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사자 본인 및 가족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3%, 5%, 10%)를 가산하되, 가산점수를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8)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제2회 임용시험 “사회복지9급”에 한함)

아래 표에 제시된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 중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일반직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 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 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 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 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야	일반직 6급 이하	컴퓨터활용능력1급	1%	워드프로세서(舊 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0.5%

※비고

- 가) 통신·정보처리분야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 가산합니다.
  - 나)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됩니다.
  - 다)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따라 2012년 1월 1일 부터 워드프로세서 2급, 3급이 국가 기술자격에서 제외(폐지)됨에 따라 종전 워드프로세서 1급만 가산 대상자격증에 포함됩니다.(舊 워드프로세서 2·3급은 가산대상 자격증이 아님)
-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아래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 중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류)급	가산자격증	비 고
사회복지9급	변호사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1)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산점과 자격증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적용됩니다.
- 2) 자격증소지자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다만, 하나의 동일한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대상'과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대상'으로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분야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 3)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 이내(가산점 등록기간)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가산비율을 확인하고 취업지원, 기술자격·면허증의 명칭과 증명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잘못 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해당 시험의 가산점 등록기간 내에 미등록(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가산특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처리 됩니다. (필기시험의 OMR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 10.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임용시험은 모집단위별로 실시됩니다.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미만)과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응시자 주의(유의)사항 미 준수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준수(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라.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의장이 발행한 유효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종사자(감독관, 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마. 무선호출기, 핸드폰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체 사용할 수 없으며, 부정행위 예방을 위하여 시험당일 시험실내 반입을 금지할 예정입니다.(시험시간 중 휴대적발 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 바. 임용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가점 등 시험에 관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 본 시행계획은 우리 도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내용을 충청북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chungbuk.go.kr>) 「시험채용」란에 게시합니다.
- 아. 필기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에 위탁 출제하며 공개로 시험종료 후 본인의 문제지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제66조(정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시험장소 공고 시 공고 예정)

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및 제89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 바.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 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9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82조제1항의 비위면직자 등이 같은 조 제2항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총무과(043-220-2532~2536)로 문의하거나 충청북도 인터넷 홈페이지(www.chungbuk.go.kr) 『시험채용』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